
2026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(안)

2025. 9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과학기술안전기반팀

목 차

I . 포상개요	1
1. 목적	1
2. 기본방침	1
II . 세부 추진 계획	2
1. 규모 및 대상	2
2. 추천제한	2
3. 선정 절차	3
4. 시상	5
※ [붙임] 추천 제한	6

I. 포상 개요

1 목 적

-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·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·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

※ 제59회 과학의 날('26. 4. 21.) 전후 시상식(전수식) 개최

2 기본방침

◆ 과학기술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예우 강화(포상 확대)

- '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' 정착을 위한 3단계 절차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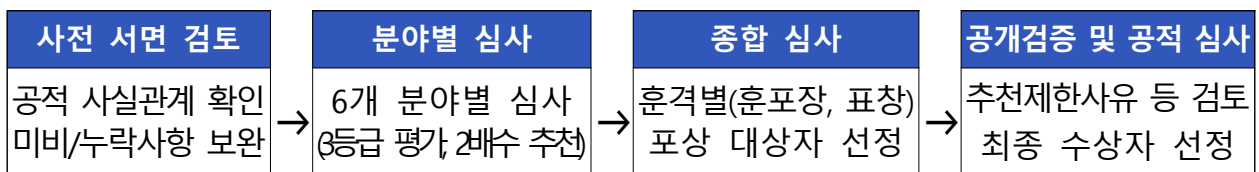
① 우수성과자 적극 발굴 → ② 철저한 공적 검증 → ③ 수상자 예우

※ '정부포상 업무지침'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계에 특화된 포상제도 운영

1. 과학기술분야 우수성과자 적극 발굴

- (국가 전략 추천) 국민·기관 추천 외에도 우수 과학기술 연구자, 논문피 인용 상위 1% 연구자 등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기여한 자를 집중 발굴
- (해외 인재 지원) 외국인·재외국민 등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자도 추천되도록 홍보 확대

2.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



※ 철저한 심사 등을 위해 공모·접수기간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김

3. 수상자 예우 강화

- 과학기술인(산·학·연)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 확대 추진
- 국가행사에 수상자를 적극 초청하고, 수상자 공적 홍보도 강화

II. 세부추진 계획

1 규모 및 대상

○ 포상 규모 : 총 00명

※ 정부포상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와 규모협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

※ '25년 포상 규모 : 84점 (훈장 26, 포장 11, 대통령표창 20, 국무총리표창 27)

○ (포상대상)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

-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거나 해당분야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한 자
- 탁월한 연구개발성과 또는 창의적인 학술 연구업적을 이룩하여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·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
-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도 또는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현격히 기여한 자
-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,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
- 과학기술분야 정책, 인재양성, 제도 발전,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국가 과학 기술 저변확대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자
-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국가·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한 자

2 추천 제한

※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

○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

○ 「상훈법」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채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채불사업주(기관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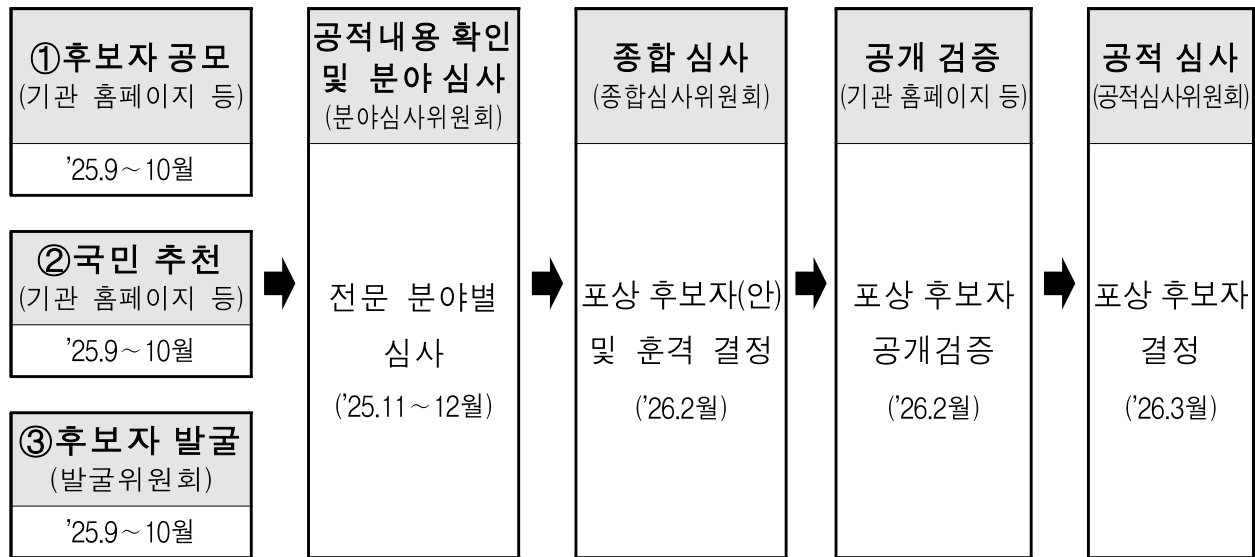
○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자

○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, 징계·형사 처벌 등이 진행 중인 자 등

3

선정 절차



가. 후보자 모집 · 발굴 (과기정통부, 관련 부처 및 각 기관)

① 공개 모집 (<https://prize.kofst.or.kr>)

- (방법) 공고*를 통한 후보자 공개모집('25.9.18. ~ '25.10.17. : 30일)

*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(www.sanghun.go.kr) 등

- (추천권자)

- 기관장 추천 : 소속기관장,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

※ 기관별 7명 이내, 훈격별 3명 이내 추천 (산업계 : 제한 없음)

※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
- 개인연대 추천 :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종사자 3인 이상의 추천

② 국민 추천 (<https://prize.kofst.or.kr/publicrecomm/>)

- 일반국민 대상 후보자 모집을 통해 국민 속 숨어있는 유공자 발굴

※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
③ 발굴위원회 추천

- 논문피인용 상위 1% 연구자,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·재외국민, 산업계 연구자 등 우수 공적자 발굴

발굴위원회 개요

- (구성) 과학기술계 대표단체의 전현직 (부)기관장급 30명 이내(발굴위 강화)
- (기능) 공개모집에 의하여 추천되지 않은 우수과학기술자 발굴 및 전문성 심사

나. 분야심사위원회

- 모집·발굴한 후보자의 심사를 위해 분야별 심사위원회 운영

분야심사위원회 개요

- (구성) 산·학·연 전문가, 정부포상 기존 수상자 등 6개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
 - ① 기초·미래원천(기초연구, 측정, 표준, 천문 등)
 - ② 정보·전자·통신(전기, 전자, 컴퓨터, 통신, 광기술, 소프트웨어 등)
 - ③ 기계·설비·소재(기계, 선박, 항공, 우주, 소재, 설비 등)
 - ④ 화공·생명과학(화공, 생물, 농수산, 보건 등)
 - ⑤ 에너지·자원·환경(원자력, 자원, 해양, 환경, 토목, 건축 등)
 - ⑥ 과학기술진흥(과학기술정책, 연구성과확산, 행정지원, 언론, 출판, 저술 등)
- (기능) 분야별로 공모 후보자를 심사하여 종합심사위원회로 추천

- 공적내용 확인 및 분야별 심사

- ※ 사전 서면검토를 거쳐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
- ※ 공적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지, 공적 이외의 요인(사회적 지위, 성별 등) 배제
- ※ 공적조서 및 연구개발 성과 등 상세 자료를 심사자료로 작성

다. 종합심사위원회

- 분야별 심사결과, 발굴위 발굴결과를 토대로 포상후보자(안)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

종합심사위원회 개요

- (구성)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(15명 내외)
- (기능) 분야별 심사결과 및 발굴위원회 발굴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추천순위 및 등급을 결정

- 포상후보자(안) 및 훈격 결정

- ※ 분야별 심사결과, 심사기준 등을 바탕으로 훈격별 최적의 포상후보자(안) 심의·결정

라. 공개검증

- 공모·발굴된 후보자 공개검증 및 추천제한 사항 확인
 - 후보자의 주요공적 등을 기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 의견 수렴
- 후보자의 소명 및 조회 등 확인
 - 공개검증을 통해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, 관계기관 조회, 현장 확인 등

마. 공적심사 (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)

-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,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류별·등급별 최종 포상후보자 선정

4

시 상

- 포상후보자 행정안전부 제출 : '26.3월
- 차관회의, 국무회의, 국무총리 결재, 대통령 재가 : '26.4월
- 과학의 날 시상 : '26.4.21. 전후

□ **일반국민**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2) 형사처분

가)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나)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마)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바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아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
-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가)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 - 나)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 - 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 - 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

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
자료가 제공된 자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
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
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
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
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□ 재직공무원

1)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
2) 형사처분

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)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
4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3)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가)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나)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※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
5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6)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
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7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